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령 이 명 박

2009년 5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달 곤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대통령령 제2149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정의)제2호”를 “법 제2조(정의)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8촌 이내의 혈족”을 “6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제15조의6제2항제1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의5제2항제8호 중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17조의9를 삭제한다.

제17조의10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의3제1항 본문”을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 중 “7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1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출자현황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 1회 또는 연 2회 공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을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자와의 계약·합의 등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같은 법에 따른 공개매수는 제외한다)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제10항(종전의 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는 취득하려는 주식의 소유자와 계약·합의 등을 한 날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제21조제4항 중 “7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를 각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3제2항제1호 중 “주식소유현황,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제3항에 따른 소유지분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결지분율, 그 밖의”를 “주식소유현황 등”으로 한다.

제23조의3 및 제2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

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을 “법 제17조(과징금)”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2호가목 표 중 제2호다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란 및 마목란을 각각 제2호다목란 및 라목란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11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적용한다.

[별표 3]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1.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2,000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되어,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5,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5,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한 경우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과태료금액(단위:만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 한 경우	누락한 경 우	500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기한을 넘긴 경 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누락한 경우	1,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			

구분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2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20만원	150만원	250만원	
	2조원 이 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 무 위반행위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 따른 신고 후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기업결합	2천억원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별표 4]

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1.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7,000만원으로 한다.
- 나.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 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증 금액이 속하는 범위	미만 2천 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2조원 이 상			
		1,0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 가산사유 및 금액

가.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 규정의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비고

1.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자산총액”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매출액”은 “영업수익”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

9. 3.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 축소(영 제3조제1호가목)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동일인관련자의 친족 범위 중 8촌 이내 혈족을 6촌 이내 혈족으로 합리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 및 행정 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9 등 삭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영 제17조의11 신설)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회사 및 분기별 공시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공동감면신청(영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신설)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분할·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과징금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공동감면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